주택건설 실적의 확인기준(제6조제3항 관련)

- 1. 주택건설 실적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(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일을 말한다)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 실적은 사용검사일(「건축법」에 따른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말한다)을 기준으로 한다.
- 2. 등록사업자가 토지소유자, 주택조합, 고용자(이하 "토지소유자등"이라 한다)와 공 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주택건설 실적을 산정한다.
 - 가.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 다.
 - 나.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토지소유자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 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50퍼센트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 다.
- 3. 등록사업자가 다른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실적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른다.
- 4. 등록사업자가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공 자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해당 등록사업자의 실적으 로 한다.